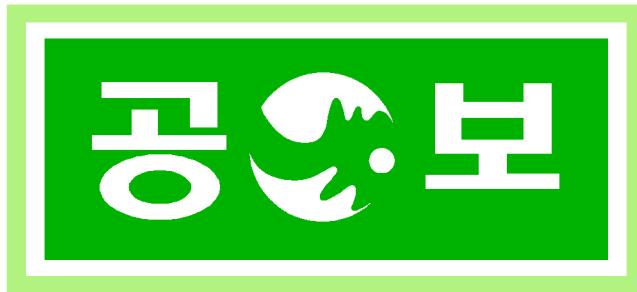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882 호 2014. 4. 9(수)

훈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0호[울산광역시 북구 직원수련원 이용 규정] 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직원수련원 이용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4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원수련원 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의 사기 양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수련원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직원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에 둔다.

제3조(사용대상자) 사용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공무직, 청경 포함) 및 그 가족으로 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한다.

제4조(신청방법) 수련원은 새울 행정시스템에서 매월 1일에 그 다음 날 사용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18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단, 1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한다)

제5조(사용대상자의 결정) ① 수련원 사용일이 중복 신청되는 경우, 새울 행정시스템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추첨은 매월 1일 신청 접수 마감 후에 한다. 단, 공공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중 가장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 2회 초과 사용자와 중복될 경우에는 처음 신청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수련원 사용 신청자가 없거나 취소된 날에 대해서는 신청집수 마감 후에
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결정한다.

④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대상자를 다시 결정한 경우 사용대상자는 사용일 결
정 당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취소한다.

제6조(사용일수) 수련원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성수기(7월 15일~8월 31일), 연말연시(12월 24일~다음해 1월 5일), 설·추
석연휴에는 1박 2일로 한다.

제7조(입실 및 퇴실시간) 수련원 사용자는 사용 첫날 15시 이후에 입실하여야 하
고, 사용 마지막 날 12시 이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수련원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르며, 사용대상자 결정 후 5일 이내
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취소한다.
② 사용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공공목적으로 사용 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취소 및 환불) ① 수련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100퍼센트, 2일 전까지는 70퍼센트, 1일 전까지는 50퍼센트를 환불한다.
② 사용료 환불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수칙)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자와 사용자는 같아야 한다.
2. 신청인은 사용 전에 총무과에서 열쇠 및 물품 목록을 수령하여야 한다.
3. 수련원 사용 후 물품은 워워치에 정리정돈하고 객실청소를 깨끗이 하
며,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는 놔가져 간다.
4. 퇴실 시 물품 목록을 작성한 후 열쇠와 함께 총무과에 반납하며, 시설
및 물품 파손, 분실 시 사용자가 변상한다.
5. 화재예방을 위하여 객실 내에 비치된 시설 이외의 화기류 사용을 금지
한다.
6. 애완동물 동반 입실을 금지한다.
7.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명기구 및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한

다.

8. 음주, 고성방가 행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실내에서 심하게 뛰거나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수련원 사용을 1년간 제한한다.
2. 제10조에 따른 사용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1년, 3회 이상은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련원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면 적	사 용 료	기준인원	비 고
201호	20.78m ² (구 6평형)	20,000원	4명	
202호	72.16m ² (구 21평형)	50,000원	12명	
301호	30.79m ² (구 9평형)	30,000원	6명	
302호	75.07m ² (구 22평형)	70,000원	25명	교육장

※ 공공목적으로 사용 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